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승진 의원 (찬성자 14명)

나. 의안번호 : 제 2560 호

다. 발의일자 : 2025. 03. 31

라. 회부일자 : 2025. 04. 02

2. 제안이유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안 제3조제1항제4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4. 05.~04. 0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우선 설치대상 외에도 소득 수준이 낮아 화재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취약 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구축하려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 -----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1. ~ 3.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 가 거주하는 주택	4. -----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 <u>및 차상위계층자</u>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 9. (현행과 같음)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¹⁾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²⁾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말하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그리고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 주택에도 설치가 의무화³⁾되었음.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인 2010년부터 「주택 소방안전대책(예방과 제3744(2010.2.19.)호)」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권고와 화재에 취약한 저소득층 등에게는 이를 무상으로 보급하였으며,
- 이후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2012년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법적 의무화 경과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같은 법 부칙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에 따르면, 해당 설치 의무는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대수선되는 주택에는 즉시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됨.

-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본 조례 제3조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인 홀몸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인근(20m 이내)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 가구 수는 총 280,590가구임.([표 2 참조])

[표 2] 2010년~2024년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실적(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가구)

연도별	합계 (가구)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기타
총계	280,590	37,905	45,356	5,244	151,864	16,808	540	2,368	13,008	47	7,450
2024년	39,537	1,287	7,344	228	23,719	3,179	61	669	2,088	32	930
2023년	37,014	3,283	7,154	249	15,630	1,192	479	1,699	7,313	15	-
2022년	36,805	1,941	2,626	3	18,907	9,741	-	-	1,853	-	1,734
2021년	34,261	3,033	4,025	563	23,944	2,696	-	-	-	-	-
2020년	16,456	-	-	-	16,456	-	-	-	-	-	-
2019년	3,940	-	-	-	3,940	-	-	-	-	-	-
2018년	3,651	-	-	-	3,651	-	-	-	-	-	-
2016년	4,940	632	345	159	3,217	-	-	-	-	-	587
2015년	14,500	2,883	1,576	955	8,037	-	-	-	296	-	753
2014년	20,200	2,744	4,043	1741	8,268	-	-	-	1,458	-	1,946
2013년	20,282	3,232	3,766	682	11,102	-	-	-	-	-	1,500
2012년	17,640	3,642	2,825	573	10,600	-	-	-	-	-	-
2011년	22,190	9,887	7,827	83	4,393	-	-	-	-	-	-
2010년	9,174	5,341	3,825	8	-	-	-	-	-	-	-

■ 차상위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⁵⁾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⁶⁾의 50% 이하인 계층에 해당하는 관내 차상위계층(2025.2월 기준 총 39,328가구)⁷⁾에 대해서는 이들 중 조례상 우선 설치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⁸⁾하고 있으며, 다만 편성된 예산에 여유분이 있을 때는 나머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하생략)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7)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 차상위계층 현황(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공) (단위 : 가구)

자 격 명		수급가구수(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
합 계		39,328
소 계		32,928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	5,983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37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646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	18,927
한부모가족	소 계	6,400
	모자가족	5,050
	조손가족	16
	부자가족	1,332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2

8) 「2018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예방과 제4812(2018.2.20.)호)」를 통해 각 소방서에서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명단 요청을 통해 조례에서 정하는 우선설치대상 외 차상위계층도 지원추진(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 이를 위해 각 소방서는 매년 상반기 자치구로부터 차상위계층 명단을 제출받아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가구를 일일이 직접 확인하여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차상위계층은 최근 4년간 총 16,559가구로 파악되었으며, 한편 보급 실적에는 기지원 대상자의 이사 등 변동에 따른 설치 건이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의 누적 보급 가구 수는 총 16,808가구로 확인됨.([표 3 참조])

[표 3] 서울특별시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가구)

구분	일반주택 거주 가구 (자치구 통보대상)	최근 4년간(2021~2024년 보급 현황)				
		총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가구수	16,559	16,808	3,179	1,192	9,741	2,696

- 이처럼 차상위계층의 신규 발생 및 기존 설치 가구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본 개정안과 같이 차상위계층을 우선 설치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추가에 대한 의견(안 제3조제1항제4호)

-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소득 수준은 낮지만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상위계층을 우선 설치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명문화된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임.
- 다만,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자치구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명단에는 우선 설치대상 여부나 주거 형태(아파트·기숙사 거주 여부 등)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 소방서가 가구별로 직접 확인·선별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대상 선정 방식의 개선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